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2. 11.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10조 제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을 “13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수정
- 조례 제10조 제3항중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 되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는 단서 규정 신설
- 조례 제12조(회의운영) 중 제3항을 삭제함

3. 참 고 사 항

-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행정자치부)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중 “9인 이내”를 “13인 이내”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중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은 위원
으로 위촉할 수 없다”

안 제12조(회의운영) 중 제3항을 삭제한다

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단체 소속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u>9인 이내</u>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u>(단서 신설)</u>	제 10 조 (위 원 회 구 성) ①----- ----- ----- ----- ②----- ----- <u>13인 이내</u> ----- ----- ----- ③----- ----- ----- ----- -----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 단체 소속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 ②----- ----- ----- <u>(삭 제)</u>